

1. 개정이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소속 조정(안 제1조)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방식 조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 및 소집 사유 조정(안 제4조)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통지 조정(안 제6조)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3.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로, “같은 영 제22조의5제1항”을 “같은 영 제22조의9 제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

부 과학기술정책관”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해당 위원”을 “협의하여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공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를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로, “미리”를 “협의하여 미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을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협의하여”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을 “위원회는 제4조제1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u> <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조(위원회의 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u>연구개발비가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u> <u>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u> <u>연구개발비에</u>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한 사항 및 <u>같은 영 제22</u> <u>조의5제1항</u>에 따른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1 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u>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u> <u>술심의위원회</u>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u>신성장</u> <u>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u>는 <u>위원회</u> <u>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u> <u>한다)</u>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u>산업통상자원부 산</u>	<u>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u> <u>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u> 제1조(위원회의 설치) ----- ---- <u>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u> <u>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u> <u>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u> <u>·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u> ----- <u>같은 영 제22조</u> <u>의9 제1항</u>----- ----- ----- <u>기획재정부장관 및 산</u> <u>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u> <u>운영하는 신성장·원천기술심</u> <u>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u> <u>다)</u>-----.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u> <u>는 위원장 2명</u>----- ----- ----- ----- ----- -----. ② ----- <u>기획재정부 세제실</u>

업정책실장이 된다.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성장실장이 공동으로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 -----.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u>산업기술정책 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 술정책관</u>	1. ----- ----- <u>산업기술융합 정책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과학기술정책국장</u>
2. <u>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u>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 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u> 협의하여 위 촉하는 사람	2. <u>신성장·원천기술</u> ----- ----- ----- -- <u>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제2호에</u> 해당하는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u>해당 위원</u> 을 해촉 (解囑)할 수 있다.	⑤ <u>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 자원부장관</u> ----- ----- ----- <u>협의하여 해당 위원</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공동으로</u> ----- -----.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u>	② <u>위원장이 모두 부득이</u> ----- -----

는 위원장이 <u>미리</u>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u>협의하여 미리</u> ----- -----.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u>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별표 8의8에 따른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삭 제>
② 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 다.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 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1.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 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삭 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 -----.	2.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삭 제>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	② 협조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u> 정한다.	② ----- ----- <u>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u> -----.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u>위원장이</u>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④ -----. --- <u>위원장이 협의하여</u> ---- ----- -----.	제6조(회의 결과의 통지) <u>산업통 상자원부장관</u>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u>기획재정부장관</u>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결과의 통지) <u>위원회 는 제4조제1항</u> ----- ----- ----- <u>신청인</u>-----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 관</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u>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u>위원회는</u> 직무를 <u>수행하기</u> ----- -----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u>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 ----- <u>기획재정 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협의하여</u> -----.